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21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 : 김원이 · 김한규 · 고민정

박지원 • 차지호 • 조인철

김종민 · 송재봉 · 김성회

민형배 • 남인순 • 박해철

윤건영 • 허성무 • 주철현

문금주 • 서삼석 • 채현일

강선우 • 민홍철 • 신정훈

전진숙 · 정진욱 · 김 윤

박정현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 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음.

이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항공사의 귀책뿐만 아니라 공항 시설물 및 공항 환경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함. 전문가들은 공항 내 둔덕의 콘크리트 설계, 조류 충돌 예방활동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함.

그러나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구성을 놓고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불거짐.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무안공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 등이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임.

현재 조사위원장은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부처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는 비판을 제기함.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인 연 방교통안전위원회(NTSB)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캐 나다, 호주 등도 교통안전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여 조사의 객 관성을 담보하고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 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 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비상임위원 중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 또는 피해자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여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 및 피해자의 입장을 위원회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등).

법률 제 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 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③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되, 비상임위원 중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 또는 피해자대표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④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 또는 피해자대표 회의 참가 자격 및 회의 소집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통령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대통령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대통령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 에 따라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이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비상임위원 중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 족대표 회의 또는 피해자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 촉한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설치된 사무국 및 그 직원과 사고조사관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따라 위원회에 설치된 사무국 및 그 직원과 사고조사관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 설치) ① 항공·철도사고등 의 설치) ① -----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 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 -----국무총리 소속으로-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무총리는-----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 · 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 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구성한다. 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 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 ③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되, 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임위원 중 1명은 유가족 및

- 제13조(분과위원회) ①·② (생략)
 -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u>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자문위원) 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 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으 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6조(사무국) ① ~ ③ (생략)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u>렁렁으로 정한다.
- 제17조(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생 략)

<u> </u>
해자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
을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④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 또는 피해자대표 회의 참
가 자격 및 회의 소집 방법 등
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u>총리</u>
<u>령</u>
제14조(자문위원)
<u>총리령</u>
<u>.</u>
제16조(사무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총리</u>
<u> 려</u>
제17조(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현행과 같음)

피해자 가존대표 회의 또는 피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철도종 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u>국토교</u> 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생 략)
- 제20조(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생 략)
 - ②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 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 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총리령
<u>.</u>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총리령</u>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u>총리령으로</u>